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신규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의위원회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신설>	제4조(심의위원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u>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u> 1. <u>심의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u> 2. <u>심의대상과제의 협력기관에 소속된 자</u> 3. <u>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u>
<신설>	⑥ <u>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u>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⑥ (생략) <신설>	⑨ <u>평가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은 제외한다.</u> 1. <u>현장평가대상기관의 참여연구원</u> 2. <u>현장평가대상기관에 소속된 자</u>

⑦ (생 략)

⑧ (생 략)

제5조(평가위원회)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신 설>

제13조(지정유효기간)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제16조(표준개발원칙)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3. 그 밖에 현장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⑩ (현행과 같음)

⑪ (현행과 같음)

제5조(평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13조(지정유효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 분야를 추가하려는 경우  
에는 지정유효기간은 지정 분  
야 추가 전 지정서의 지정유효  
기간으로 한다.

제16조(표준개발원칙)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생략)

6. 시장 수요가 많고 필요로 하는 시기에 표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적합성과 적시성이 있어야 한다.

7. (생략)

제17조(진도점검) ① 대표기관의 장은 협력기관이 규칙 제2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제21조(문서보관) ① (생략)

② (생략)

<신설>

제28조(협약의 해약)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3.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생략)

5. (생략)

6.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시장 수요가 많고 필요로 하는 시기에 표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적합성과 적시성(시기가 알맞음)이 있어야 한다.

7. (현행과 같음)

제17조(진도점검) ① 대표기관의 장은 협력기관이 수행과제를 적합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문서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대표기관으로 이관된 문서는 원장과 협의하여 관리한다.

제28조(협약의 해약)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사업비를 횡령·편취(속여서 빼앗음)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생략)

8. (생략)

9. (생략)

10.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생략)